

심사보고서

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01
----------	-----

2024. 10. 18.(금)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4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10월 2일

라. 상정일자 : 2024년 10월 11일

- 제4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방무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기관별 출연개요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계				
1	충북연구원	-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된 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4,823,00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지방 행정·재정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국·자치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250,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제3항
3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기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0,00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4	한국지방세연구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 필요	188,675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다. 기관별 주요내용

①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 4,823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5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 60백만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 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비 지원
-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④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 189백만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

3. 검토보고 요지

① 충북연구원

가. 충북연구원 현황

- 충북연구원은 지역 현안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를 통하여 충북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0년 5월 설립되었음.
- 현재 충북연구원장 1명, 연구직 28명, 일반직 11명으로 총 40명의 인력을 갖추고 있음(2024년 9월말 기준).

<충북연구원 인력 현황>

(단위 : 명)

년도 \ 구분	구분	정원	현원	비고
2021년	원장	1	1	43/43
	연구직	30	30	
	일반직	12	12	
2022년	원장	1	1	46/43
	연구직	33	30	
	일반직	12	12	
2023년	원장	1	1	46/40
	연구직	33	27	
	일반직	12	12	
2024년	원장	1	1	46/40
	연구직	33	28	
	일반직	12	11	

○ 2024년 9월말 기준 137건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원 1명당 평균 4.8건의 연구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상임연구원의 연구실적은 총 691건임.

<충북연구원 연구 수행 현황>

(단위 : 건)

년도 \ 구분	계	1인 평균 수행 건수	기본과제	창의·기획과제	수탁과제	정책과제
2020년	132	4.4	24	25	30(8)	53(31)
2021년	147	4.9	25	18	49(17)	55(30)
2022년	135	5.13	25	19	41(14)	50(30)
2023년	140	5.18	27	21	48(20)	44(29)
2024년 (9월말 기준)	137	4.8	23	21	43(14)	44(29)
합계	691	4.97	101	83	211(73)	246(149)

※ ()는 도의뢰 과제 건수

나. 주요내용 검토

-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¹³⁾과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¹⁴⁾에 근거를 두고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충북연구원은 충북 지역의 주요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며 도정 발전에 기여해 왔음.
- 충북연구원 대상 출연금 규모는 총 48억2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출연금 45억6천7백만원 대비 5.59%, 2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출연금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충북연구원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안)	증감
충북연구원 운영	4,217,400	4,473,000	255,600
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	350,000	350,000	-
출연금 계	4,567,400	4,823,000	

13)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14) 제6조(운영경비)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북연구원 202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1) 세입 개요 (자체수입 + 출연금)

(단위 : 천원)

과 목		2025년	2024년	증감
합	계	6,102,591	5,888,456	214,135
자체수입	소 계	1,629,591	1,671,056	△41,465
	예금이자수익	20,000	20,000	-
	수탁과제전입금	797,335	726,635	70,700
	보조사업전입금	41,200	57,000	△15,800
	공투센터전입금수익	10,000	90,894	△80,894
	기금이자전입금수익	69,096	87,567	△18,471
	기타영업외수익	6,000	3,000	3,000
	순세계잉여금	685,960	685,960	-
의존수입	출연금	4,473,000	4,217,400	255,600

2) 세출 개요 (필요경비)

(단위 : 천원)

과 목			2025년	2024년	증감	
합	계		6,102,591	5,888,456	214,135	
사업비용	목적사업비	소 계	669,997	773,853	-103,856	
		자체사업	239,600	258,800	-19,200	
		기획사업	430,397	515,053	-84,656	
	일반관리비	소 계	5,353,314	5,061,440	291,874	
		인건비	3,942,536	3,757,320	185,216	
		물건비	1,084,138	945,159	138,979	
		경상이전	326,640	358,961	-32,321	
	예비비	예비비	32,063	19,797	12,266	
	자본적지출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47,217	33,366	13,851

다. 종합 검토의견

- 충북연구원은 충북의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요 시책 과제의 개발을 비롯한 각종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출연의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충북연구원은 세입에 있어서 출연금 및 수탁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다양한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현황

- 산업화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함에 따라, 1984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재)지방행정연구소가 설립됨.
-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연구원’)으로 변경되고(1986.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1986.5)이 제정·시행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의무가 법정화됨.
- 연구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평가 및 연구,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2025년 충청북도의 출연 요청액은 전년도와 같은 250백만원이며, 출연금 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 출연금 집행계획(안)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기초	
합 계	250,000		
소 계(80%)	200,000		
인 건 비	200,000	•연구원 총액인건비(71억원) 2.7%	
소 계(14%)	35,000		
연구 사 업 비	정책연구과제	10,000	•정책연구 개발사업 등
	시도현안과제	9,000	•현안과제 개발사업 등
	학술행사 등	8,000	•국내·외 세미나, 지방의정아카데미, 유관기관 및 시도 연구원 협력사업,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지원 등
	발간사업 등	8,000	•지방행정연구, 지방자치이슈와포럼, 지방자치정책 브리프, 지방의정브리프 등
소 계(6%)	15,000		
일 반 운 영 비	15,000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전산운영, 교육훈련, 시설비 및 청사관리비 등	

나. 검토의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¹⁵⁾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 등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충청북도가 요청하는 분야의 협력연구를 매년 수행하고 있음.
- ※ 출연금을 분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매년 정책과제연구와 정책이슈리포트를 지원하고 있음.

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지자체 정책지원사업 현황〉

구분	연도	연구명
정책연구 과제 (시도별1건)	◆ 광역 시도에 국한된 지역정책 중심의 연구에 더해 자치단체 간 상생적인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지역의 공통 현안을 연구	
	2020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021	정부 추가 특례 시군구 선정기준 관련 대응 방안 연구
	2022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
	2023	(가칭)충북인구연구센터 설치타당성 및 활용방안 연구
	2024	충청북도 공유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정책이슈 리포트 (시도별1건)	◆ 자치단체별 현안이슈 대응을 위해 자치단체의 환경을 고려한 컨설팅	
	2020	청년수당 제도 도입 타당성 분석 및 실질적·효율적 지원 방안
	2021	충북형 보통교부세 산정수요 발굴 및 교부세 확충 방안
	2022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2023	충북 소방활동 분석을 통한 소방력 운영 효율화 방안
	2024	산업단지가 충청북도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매년 균등분담금을 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미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시·도별 재정력, 인구수, 시·군수 등이 상이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국 시·도 공동 출연 : 각 250백만원(세종시 150백만원)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가. 지방공기업평가원 현황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경영지도·자문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제3항¹⁶⁾에 따라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특수법인임.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¹⁷⁾에 근거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음.
- 2025년 출연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한 60백만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16)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2~3항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평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5~8항 생략)

〈 시·도별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4	2025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2	1,002	-	9.6230	-	498	377	-	504
서울특별시	78	78	-	1.0263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171	3	36	9	1	24
대구광역시	54	54	-	0.6584	2	30	6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11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6030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6039	2	30	6	1	24
울산광역시	54	54	-	0.5363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0842	4	42	97	4	42
강원특별자치도	60	60	-	0.4970	1	24	30	3	36
충청북도	60	60	-	0.5284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6082	2	30	33	3	36
전북특별자치도	54	54	-	0.4643	1	24	20	2	30
전라남도	54	54	-	0.4519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	0.3989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6440	2	30	36	4	42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나. 검토의견

- 충청북도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혁신 및 공공서비스 질 제고와 임직원에게 대한 전문교육 등을 통한 경영 합리화를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출연의 법적 근거 및 출연금 세부내역도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4 한국지방세연구원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

-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¹⁸⁾에 의거하여 설립된 기관임.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¹⁹⁾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²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의 법적 근거 및 출연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18)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충청북도 출연금 내역(2024~2025년) >

(단위: 천원)

자치 단체명	산출기초		출연금		
	'22년 결산 보통세(A)	'23년 결산 보통세(B)	'24년 출연금 ((A)*1.2/100 00)	'25년 출연금 ((B)*1.2/100 00)	증감내역
소 계	3,250,383,776	3,170,111,638	390,046	380,413	△9,633
본청	1,626,565,832	1,572,295,728	195,188	188,675	△6,513
청주시	865,197,051	813,001,593	103,824	97,560	△6,264
충주시	178,691,431	177,608,132	21,443	21,313	△130
제천시	100,877,929	100,796,354	12,105	12,096	△9
보은군	30,047,378	32,952,242	3,606	3,954	348
옥천군	40,423,041	41,514,020	4,851	4,982	131
영동군	34,533,801	34,701,962	4,144	4,164	20
증평군	41,468,065	46,028,229	4,976	5,523	547
진천군	126,324,027	134,395,973	15,159	16,128	969
괴산군	31,991,710	32,005,115	3,839	3,841	2
음성군	145,306,585	154,827,753	17,437	18,579	1,142
단양군	28,956,926	29,984,537	3,474	3,598	124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출연금 분담에 대한 대응으로 충청북도로부터 의뢰받은 지방세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2025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출연계획안

의안 번호	701
----------	-----

제출연월일 : 2024년 10월 2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2025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기관별 출연 개요

연번	대상기관	출연목적 및 필요성	출연금액 (단위:천원)	관계법령 (출연근거)
1	충북 연구원	-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충북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4,823,000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2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	- 지방 행정·재정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해 국가·지자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 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	250,000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 제3조제3항
3	지방 공기업 평가원	-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기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60,000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4	한국 지방세 연구원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재원 지원 필요	188,675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3. 주요내용

① 충북연구원 운영 출연금 지원 : 4,823백만원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충북발전 정책연구를 위해 설립·운영되는 (재)충북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 : 250백만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지방 행정·재정·세제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및 전국 시도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사업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지원: 60백만원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연구, 경영지도, 경영자문 및 경영평가업무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운영비 지원
※ 17개 시·도 공동 출연

④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 189백만원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 ※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사업임

4. 관계법령 발췌 등 : 붙임

붙임 1

1] 충북연구원

< 출연 계획 >

사업명	충북연구원 운영		출자·출연금	4,823,000천원	
출자·출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재)충북연구원 ○ 대표 : 황인성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 인력 : 정원 46명(현원 40명) - 주요사업 : 도정발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등 				
사업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내용 : 인건비 및 운영비 ○ 출연금액 : 4,823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운영 : 4,473백만원 - 특별연구조직(공공투자분석센터) : 350백만원 				
출자·출연필요성	○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분석 및 구체적인 대안 제시 등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충북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충북연구원 출연 필요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연구원은 충북발전을 위한 지역현안 조사·분석, 대안 제시 등 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 보조사업 전입금 수입 등 자체세입 감소와 인건비(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자산취득비(내구연한 도래 장비 교체 등) 등 세출 증가로 '24년 대비 2억5천만원 증액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소속부서장	팀장	담당주무관	전화
		정선미	황병두	이상옥	220-2135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3-220-1147 홈페이지 : www.cri.re.kr			
주요연혁	- 1990.05.15. 충북경제연구소 개소 - 1994.12.27. 충북개발연구원 명칭변경 - 2011.03.24. 충북발전연구원 명칭변경 - 2016.04.20. 충북연구원 명칭변경			기관형태 (출자,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4.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98		40		58			
임원 (’24.9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직위)		임기			
	이사장	김00	충청북도지사		재임기간			
	이사(당연직)	정00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재임기간			
	”	이00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재임기간			
	”	김00	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재임기간			
	”	이0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재임기간			
	”	우00	신한은행 충북지역본부장		재임기간			
	”	황00	충북연구원장		22.10.01. ~ 25.09.30			
	이사(선임직)	한00	미래도시연구원 이사장		23.11.01 ~ 26.10.31			
	”	유00	미래농어촌개발연구원 대표		23.11.01 ~ 26.10.31			
	”	윤00	충청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23.11.01 ~ 26.10.31			
	”	남00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3.11.01 ~ 26.10.31			
	”	이00	(사)충북경제포럼 회장		23.11.01 ~ 26.10.31			
	”	허00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23.11.01 ~ 26.10.31			
	”	안00	청풍로펌 변호사		23.11.01 ~ 26.10.31			
	”	김00	청주대학교 교수		23.11.01 ~ 26.10.31			
	감사(당연직)	정00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재임기간			
감사(선임직)	김00	공인회계사		23.11.01 ~ 26.10.31				
주요기능	- 도정 전반의 중장기계획 수립 등 지역개발정책 수립 -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방행정발전에 대한 조사연구 - 국내·외 각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자본금(기금) (단위:백만원)		2,171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재무현황 (백만원) ’23.12.31기준	자산	10,796
	일반 회계	예산액	6,107	5,861	5,888		부채	832
		지자체 지원액	4,729	4,390	4,456		자본	9,963
2023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4,908			16,117		-1,209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③ 지방연구원의 재산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북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

- ① 연구원의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운용의 과실수입
 2. 용역수탁 등 연구사업의 수익금
 3. 출판물 판매 대금
 4. 그 밖의 수입
- ② 도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출연 계획 >

사업명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원	출자·출연금	250,000천원		
출자·출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대표 : 공석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21 - 인력 : 정원 104명(현원 94명) - 주요사업 : 지방 행정·재정·세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개발, 조사·연구 등 				
사업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내용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지원 ○ 출연금액 : 25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17개 시·도 공동 출연 : 각 250백만원(세종시 150백만원) 				
출자·출연필요성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을 통해 지방분권 확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활동 수행				
근거법령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3항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공동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각 시도는 연구원 운영비, 인건비, 기금에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17개 시·도 공동 출연 ○ 자치분권 확대 정책개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와 중앙정부 협력 방안 마련 등의 역할 수행을 고려할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필요함 ○ 광역 시·도 지방분권 정책지원 등 미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전국 시도의 공동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주관부서	정책기획관	소속부서장	팀장	담당주무관	전화
		정선미	황병두	신혜정	220-2136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전화번호 : 033-769-9916			
					홈페이지 : www.krila.re.kr			
주요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4. 9 지방행정연구소 개소 - 1986.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칭 - 1986. 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정 - 2014. 11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설치 - 2016. 12 청사 이전(서울 서초동 → 강원 원주혁신도시) 			기관형태 (출자,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4.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05		94		11			
임원 (’24.9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소속(직위)		임기			
	이사장	공석			’23.12.16.일자 임기 만료			
	이사(당연직)	21명	행안부(4)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자치분권국장, 지방재정국장, 균형발전지원국장 광역 사도(17) : 기획관리(조정)실장		재임기간			
	이사(임의직)	김00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4. 3. 4. ~ ’26. 3. 3.			
	”	김00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4. 3. 4. ~ ’26. 3. 3.			
	”	손00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4. 3. 4. ~ ’26. 3. 3.			
	”	이00	부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4. 3. 4. ~ ’26. 3. 3.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행정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자료의 조사·연구 -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 평가 및 연구 - 지방행정의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59,900 (직전연도말 기준)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재무현황 (백만원) ’23.12.31기준	자산	69,781	
	일반 회계	예산액	13,631	13,352		13,196	부채	9,881
		지자체 지원액	4,100	4,150		4,150	자본	59,900
2023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2,249			19,579		2,670		

관계법령 발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 ① 연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에 의하여 운영한다.
- ②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기업평가원

< 출연 계획 >

사업명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출자·출연금	60,000천원		
출자출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지방공기업평가원 ○ 대표 : 목영만 ○ 일반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0길 12-6(서초동) - 인력 : 76명(이사장, 상임이사, 연구직 37, 일반직 23, 무기계약 7, 파견공무원 5, 비정규직 2) -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경영지도, 자문, 사업타당성, 정책연구·교육 등 				
사업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업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경영컨설팅, 정책연구과제 수행 등 ○ 출연금액 : 60백만원 - 시도별 재정력지수(50%) 및 평가대상 공기업수(50%) 고려 전국 시도별 배분 * 17개 시도 출연금액 : 1,002백만원 				
출자출연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을 통해 지방공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과 기관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적 연구기관으로서, 각 시도는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방공기업 정책연구·컨설팅·사업타당성 검토 등 지방공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연구수행을 강화하고 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 특히,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사업계획·예산·결산 등은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이사 5명(시도별 순번제 위촉)이 포함된 이사회(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감독이 가능함 				
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소속부서장	팀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승열	손정미	김송은	220-2242

< 출연기관 현황 >

설립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전화번호 : 02-3489-2700				
					홈페이지:www.erc.re.kr				
주요 연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2. 3. 재단법인 지방자치경영협회 설립 - 1994.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전환 - 2000. 1. 재)한국자치경영협회로 명칭 변경 - 2002. 9. 한국자치경영평가원 명칭 변경 - 2011. 4. 경영지도법인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 변경 - 2016. 6.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명칭변경 및 법정기관화 			기관형태 (출자,출연)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기관				
인원현황 (24.9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76명		74명 (무기계약 7명 / 파견공무원 5명)		2명				
임원 (24.9월 기준)	직책(직책명)	성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목OO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23. 5.30. ~ '26. 5.29.				
	상임이사	김OO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		'23. 6. 5. ~ '26. 6. 4.				
	당연직이사 (비상임)	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1) : 지역경제지원관 - 광역시·도(4) : 기획관리(조정)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직위 재임기간 - 광역시도 윤번제 (2년임기) ('23. 1. 1. ~ '24. 12.31.) 				
	위촉직이사 (비상임)	채OO	서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초빙교수		'24. 2.29. ~ '27. 2.28.				
		임OO	한길회계법인 부대표		'22.11.24. ~ '25.11.23.				
		이OO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24. 2.29. ~ '27. 2.28.				
		함OO	대구대학교 경찰학부 교수		'24. 2.29. ~ '27. 2.28.				
감사(비상임)	정OO	삼정회계법인 부회장		'24. 2.29. ~ '27. 2.28.					
주요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 공기업의 설립 및 투자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및 경영컨설팅 - 지방공기업 임직원 교육훈련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300			지방공기업발전기금 (단위:백만원)		11,927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2		2023		2024			
		일반 회계	예산액	18,074	17,849	19,795	재무현황 (백만원) '23.12.31기준	자산	21,425
			지자체 지원액	1,008	1,008	1,002		부채	1,666
						자본		19,759	
2023년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4,195				13,647		548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평가원에 이사회와 감사 1명을 둔다.
- ⑤ 이사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⑥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가 선임한다.
-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⑧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선임 방법 등 그 밖에 평가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원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다.
- ⑩ 평가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 계획 >

사업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지원	출자·출연금	188,675천원
출자·출연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 대표 : 강성조 ○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인력 : 95명(현원 70, 파견공무원·행정원 등 25) - 주요사업 :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사업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25. 1. ~ 12. ※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동사업 ○ 사업내용 :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출연금액 : 188,675천원('24년대비 6,513천원 감) * 산출기초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1,572,295,728천원)의 1만분의 1.2 		
출자·출연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정기 간행물 발간,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쟁송사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기에 지방세 업무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해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관부서	세정담당관	소속부서장	팀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정노	김윤미	윤유진	220-2755

< 출연기관 현황 >

설립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전화번호 : 02-2071-2789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인원현황 (2024년 9월 현원기준)	○ 정원 88명 / 현원 70명 * 육아휴직 7명 포함						
	구 분	계	원 장	관리직	연구직	전문직	사무직 등
	정 원	88명	1명	3명	56명	5명	23명
	현 원	70명	1명	3명	39명	4명	23명
총인원	95명	정원의외 인원 25명 (과건공무원12, 위촉연구·전문원8, 행정원등5)					
※ 연구직(40명) : 연구위원직 20명, 연구원직 12명, 조사분석직 8명							
임 원 (2024년 9월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이 사 장	정00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24.2.2. ~ 2027.2.1.	
	부이사장	박00	전라남도 신안군수			2024.2.28. ~ 2025.2.27.	
	원 장	강00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당 연 직	
	이 사	김00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황00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4.8.30. ~ 2025.8.29.	
	이 사	김00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2024.8.30. ~ 2025.8.29.	
	이 사	정00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2024.8.30. ~ 2025.8.29.	
	이 사	신00	충청남도 자치안전실장			2024.8.30. ~ 2025.8.29.	
	이 사	류00	대구광역시 중구청장			2024.2.28. ~ 2025.2.27.	
	이 사	서00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2024.2.28. ~ 2025.2.27.	
	이 사	이00	경상북도 고령군수			2024.2.28. ~ 2025.2.27.	
	이 사	박00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2023.8.30. ~ 2025.8.29.	
	감 사	이00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김00	부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24.2.28. ~ 2026.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27,411 (‘11~’24년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재무현황 (백만원) ‘23.12.31기준	자산	25,335
	예산액	12,805	18,069	17,689		부채	1,587
	지자체 지원액	10,422	13,797	12,383		자본	23,748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3.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7,064			15,850		1,593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 결산서
 3. 전년도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